

2024년 「경북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경상북도 및 고령군에서는 결혼 초기 높아진 주거 비용으로 인해 주택 마련에 대한 부담을 가지는 청년 신혼부부에게 월세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 11. 26.

고령군수

I. 사업개요

- 가. 사업명 : 2024년 「경북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 나. 추진배경 : 결혼 초기 높아진 주거 비용으로 인해 주택 마련에 대한 부담을 가지는 청년 신혼부부에게 월세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환경을 조성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주거여건 마련
- 다. 사업기간 : 2024. 11. 1. ~ 예산 소진 시까지
- 라. 사업량 : 9세대
- 마. 사업내용 : 청년 신혼부부가 **기납부한 월세에 대해 월 최대 30만원 (2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반기별(6개월분) 지원금 지급**
- 바. 사업대상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80만원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 ※ 신혼부부 모두 월세 주택에 주민등록상 전입신고 필수
 - ※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5년 이내이면서 신혼부부 모두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에 해당

II.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① 지원대상

가.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상 청년 신혼부부(만19세 이상 만 39세 이하)가 월세 주택에 주민등록상 같이 전입신고 되어 있고, 고령군 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면서 월세 80만원 이하에 거주하는 연소득 (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5년 이내이며, 신혼부부 모두 19세 이상 ~ 39세 이하가 되는 해의 1.1~12.31일로 하고, 선정 이후 기준 혼인신고일 및 연령 조건은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 가능

예시) 1985. 12. 31. 출생자가 2024. 12. 31.에 신청할 경우

⇒ 신청년도 2024 - 출생년도 1985 = 39세가 되는 해로 신청 가능

1985. 12. 31. 출생자가 2025. 1. 1.에 신청할 경우

⇒ 신청년도 2025 - 출생년도 1985 = 40세가 되는 해로 신청 불가

※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을 포함하여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거주하는 청년 신혼부부

예시)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업무용 제외) 등으로 보조사업자(시·군)가 인정하는 경우

나. 최초 신청은 신청일 기준 과거* 6개월분에 대해 신청을 받으며, 신청일 기준 계속하여 지원 대상 조건** 유지

※ 과거 주소지가 시·군을 달리하면 최초 신청 대상 제외(최초 신청시에는 하나의 시·군에서 6개월 이상을 거주하고 있어야 함)

※ 신청인 및 배우자 중 1명이라도 최초 신청 이전에 전세 및 경북도 외 지역으로 주소 변경 등이 있으면 신청 불가(신청일 기준 지원 대상이 아니면 신청 제외)

예시) 2024. 11. 01.(사업 공고일) → 2024. 11. 01.(최초 신청) 한 경우

⇒ 2024. 11. 01. 신청일 기준으로 과거 6개월(2024. 05. 01. ~ 10. 31.)을 지원기간으로 봄

다. 최초 신청 이후부터는 ①계속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여 6개월 단위로 총 4회(2년) 신청할 수 있으며, ②전세 및 경북도 외 지역으로 주소

변경 등이 있는 사람은 지원대상 조건이 충족된 시점까지 지원하며
신청은 반드시 주소 변경 등이 발생한 후 1개월 이내 신청해야 함
(1개월 이내 미신청 시 지급 불가)

예시) ① 2024. 11. 01.(최초 신청, 지급) → 2025. 08. 01.(2회차 신청) 한 경우
⇒ 2025. 08. 01. 신청일 기준으로 과거 6개월을 신청기간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2025. 02. 01. ~ 2025. 07. 31.(6개월분)에 대한 신청임
최초 신청 이후부터 6개월로 보고 지급기간을 산정하는 것은 아님

② 2025. 01. 01.(최초 신청, 지급) → 2025. 03. 05.(타시도로 주소 변경)
→ 2025. 03. 15.(2회차 신청) 한 경우
⇒ 2025. 01. 01. ~ 2025. 02. 28.(2개월분)에 대한 신청임

라. 신청일 기준 6개월전부터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는 신청인과 배
우자는 반드시 주민등록 상 같은 주소지에 계속*하여 거주

※ 신청인과 배우자의 주소가 달리 된 경우는 해당 지원이 종료되고, 추후 재신청 불가

< 지원 제외 대상 (신혼부부 모두 해당) >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청년 신혼부부 이외 직계존속·형제·자매 등과 같이 주민등록상 전입되어 있는 경우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상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임대주택 등 포함) 거주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유사 월세·전세 지원사업을 수혜 중인 사람(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등
※ 특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국토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경북도)은 제외
- 국가(공사·공단·기금 포함) 및 지자체로부터 금융지원을 받는 사람
※ 주거안정 월세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버팀목전세자금, 버팀목대출 등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지원 내용

가. 청년 신혼부부가 기납부한 월세에 대해 연소득(부부합산) 구간별 차등하여 최대 월 30만원(2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신청인 본인 계좌로 반기별(6개월분) 이체

연소득(부부합산)	지원금액(월)
4천만원 이하	30만원
4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20만원
5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10만원

※ 월별 기준으로 실제 월세금액(임차보증금, 관리비 제외)이 지원금액보다 적을 경우 실제 월세금액만 합산하여 지급

나. (신청 시기) 연중(지자체별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Ⅲ. 신청 절차

① 신청개요

가. 신청방법

1) 월세 계약자*가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이용하여 월세 주소지 시군으로 신청(방문 신청 불가)

※ 반드시 월세 계약자가 최초로 신청해야 하며, 향후 지원 도중에 월세 계약자가 배우자로 바뀌더라도 이후 신청도 최초 신청인 아이디로 신청(서류 심사 과정에 신청인과 월세 계약자 관계 확인)

※ 온라인 신청시스템 :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에 회원가입 후 신청

2) 신청인은 반드시 6개월*마다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함

※ 신청인은 6개월(총 4회)마다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으로 최초 신청과 동일하게 신청해야 지원 가능

3) 1회차마다 6개월 단위씩 월세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30일이 지나야 1개월로 인정(단, 최초 신청 이후부터는 1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

- ※ 1개월은 30일을 충족해야 하며 다만, 2월은 28일을 충족해야 함
- ※ 1개월 단위로 분할 신청은 불가하며, 전세 및 경북도 외 지역으로 주소 변경 등으로 1개월 단위 신청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지급

4) 신청인이 최초 신청 이후 도내 타 시군으로 주소지 변경이 있으면 지급기관을 달리*하여 복수로 신청하고, 월세 지원 신청서는 각각 지급기관별로 작성 제출(최초 신청시에는 제외)

- ※ 전입일수가 15일 이전인 경우 새로운 거주지의 시·군으로 신청하고, 전입일수가 16일 이후인 경우 과거 거주지의 시·군으로 신청
(다만, 2월은 14일 이전인 경우 새로운 거주지, 15일 이후인 경우 과거 거주지)
- ※ 예시) 2024. 11. 01. ~ 2025. 01. 16.까지는 포항시를 지급기관으로 3개월분 신청
2025. 01. 17. ~ 2025. 04. 30.까지는 경주시를 지급기관으로 3개월분 신청

나. 제출서류

- 1) 월세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2) 월세 임대차계약서*, 6개월분 월세 납입 증빙서류**
 - ※ 임대차계약서(전입신고 필수)는 확정일자 날인된 사본 제출
 - ※ 이체영수증, 통장내역 등 제출
(구두를 통한 현금 납부 불인정, 은행 등을 통해 이루어진 이체만 인정)
- 3)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제출, 반드시 과거 1년간 주소 변동사항 이력 포함
- 4)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2촌이내 친족 확인용)
 - ※ ❶ 신청인 부·모 기준으로 발급, ❷ 배우자 부·모 기준으로 발급
- 5) 국세청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명)
 - ※ 신청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증빙 서류 필수 제출
 -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 사실없음)’ 반드시 제출
- 6)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IV. 대상자 심사

가. 심사 기간

- 1) 보조사업자(시·군)는 접수 후 2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심사 결과 (적합, 부적합)를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으로 통보

※ 주택 소유 확인 절차 등으로 심사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나. 심사 결과

- 1) 심사 결과 자격요건에 부합하면 ‘적합’으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V. 지원금 지급

가. 지원금 지급

- 1) 고령군은 결정(적합) 대상자에게 신청일 기준 다음 달 30일*(토요일 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에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이체

※ 보조사업자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지급날짜가 연장될 수도 있고, 조기에 지급 될 수도 있음

- 2) 신청인이 지원 도중에 지원 대상 조건을 충족한 상태로 경북도 내로 시·군을 달리하여 주소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시·군)의 전입 일수*(30일 기준)에 따라 지급

※ 전입일수가 15일 이전인 경우 새로운 거주지의 시·군에서 지급하고, 전입일수가 16일 이후인 경우 과거 거주지의 시·군에서 지급

(다만, 2월은 14일 이전인 경우 새로운 거주지, 15일 이후인 경우 과거 거주지)

※ 예시) 2024. 11. 01. ~ 2025. 01. 16.까지 포항시에 거주(포항시에서 3개월분 지급)
2025. 01. 17. ~ 2025. 04. 30.까지 경주시에 거주(경주시에서 3개월분 지급)

- 3) 1회차 마다 6개월 단위씩 월세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30일이 지나야 1개월로 인정(단, 최초 신청 이후부터는 1개월 단위로 지급 가능)

- ※ 1개월은 30일을 충족해야 하며 다만, 2월은 28일을 충족해야 함
- ※ 1개월 단위로 분할 지급은 불가하며, 전세 및 경북도 외 지역으로 주소 변경 등으로 1개월 단위 지급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지급

VI. 이의신청

- 가. 신청인이 ‘부적합’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서 등을 보조사업자(시·군)에 제출
- 나. 보조사업자(시·군)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인의 자격요건을 재확인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 및 사업총괄(경북도)에게 **통보**

VII. 기타 문의

- 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고령군청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 ☎ 054-950-65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